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6.

발 의 자 : 신정훈 · 조인철 · 윤종오
황정아 · 이상식 · 이기현
김주영 · 김현정 · 조계원
이병진 의원 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,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, 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고, 이들 명예훼손죄는 모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소추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‘반의사불벌죄’임.

그러나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하도록 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, 언론·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, 고소·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.

또한 명예훼손죄가 제품품평·내부고발·미투운동 등을 막기위해 제3자의 고발에 의한 ‘전략적 봉쇄소송’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

도 있음.

이에 「형법」 제307조제1항을 “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”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,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7조제1항 및 제312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7조제1항 중 “事實”을 “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”로 한다.

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2조(고소) 본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07條(名譽毀損) ① 公然히 事實을 摘示하여 사람의 名譽를 毀損한 者는 2年 以下の 懲役이나 禁錮 또는 500萬원 以下の 罰金에 處한다. ② (생략)	第307條(名譽毀損) ① -----<u>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사실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第312條(告訴와 被害者の 意思) ① 第308條와 第311條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. ② 第307條와 第309條의 罪는 被害者の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.	제312조(고소) 본 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